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4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4. 18.

주 문

1. 피고가 2015. 7.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859,640원, 농어촌특별세 1,085,960원, 등록세 10,859,640원, 지방교육세 2,019,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가. 원고는 2010. 3. 15. B로부터 [redacted]도 [redacted]군 C 도로 257㎡, D 대 660㎡과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10. 피고에게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21.과 2015. 5. 1. 현장 출장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2015. 7. 8. 원고에게 취득세 10,859,640원, 등록세 10,859,640원, 농어촌특별세 1,085,960원, 지방교육세 2,019,9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 및 종교수련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해왔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음 등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E센터로 사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부동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출연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원고는 2010. 3. 15. E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0. 3. 29. E센터 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E센터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으나, CCTV를 설치하고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4. 25. E센터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교회 내 기관이나 교인이 마련된 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자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위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목적

A교회 E센터는 A교회의 성도들의 영성을 함양하며, 교회학교 및 교회기관의 수련회와 교인의 기도처로 사용함으로서 A교회 성도들의 신앙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용범위

이 센터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및 남녀 전도회의 영성수련행사
2. A교회 구역, 소그룹, 기타 정관상 임의단체의 영성활동과 E센터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3. A교인의 기도활동

3)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취사시설과 화장실, 생활 집기 등이 갖추어져 있어 숙박이 가능하며, 십자가, 피아노, 설교대, 마이크 시설이 갖추어진 방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하천인 F에 접해 있어 여름철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다.

4)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교인들이 교리교육, 기도, 설교 등이 포함된 수련회나 예배 등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행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연도	날짜 및 횟수	행사
2010	5. 22.	입당예배
	6. 12.	연합예배
	6. 18.부터 6. 19.까지	청년부 리더 MT
	7. 13.부터 9. 4.까지 10회	여름수련회
	9. 12.	등산반활동
2011	5. 10.	찬양팀 수련회
	6. 3.부터 6. 4.까지	교사 영성훈련
	7. 19.부터 8. 27.까지 6회	여름수련회
	11. 19.	정책당회
2012	1. 13.부터 1. 15까지	겨울수련회
	5. 12.부터 5. 13.까지	영성훈련
	6. 23.	안수집사월례회
	8. 14.부터 8. 21.까지 3회	여름수련회
	11. 23.부터 11. 24.까지	피택자훈련
2013	2. 13.	수요전도대 수련회
2014	2. 8.	새 가족부 수련회
	5. 1.	권사회 수련회
	8. 9.부터 8. 19.까지 3회	여름수련회

5) 이 사건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108.6㎡, 경량철골조 18㎡ 근린생활시설 2동과 그 외 여러 동의 가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 이전의 소유자인 B는 2005. 1. 15. 단독주택, 창고 용도로 위 건물들을 신축하였다가 2009. 6. 3. 각 일반음식점, 단독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원고가 취득한 이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 내지 18, 26, 34 내지 37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그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 ·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redacted]구에 교회가 있는 원고는 2006년경부터 도심에서 벗어난 기도, 예배, 쉼터 등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물색하고 헌금을 모으는 등의 절차를 하여 왔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위와 같은 목적을 반영하여 E센터 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 왔다.

② 원고는 교인들이 참석하는 수련회, 예배, 소모임 각종 회의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휴양철 수련회 목적의 이용 빈도가 높으나, 수련회에 예배, 기도, 설교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선교하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휴양철 이외에도 E센터 관리위원회를 두고 CCTV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0. 5. 10.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이용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간헐적, 일시적 사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④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 종교 단체 등이 시가 상승 등을 기대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이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종교행사의 외관을 창출할 것이 우려되나,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경위, 실제 사용 횟수와 빈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박주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끝.